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25호 2020. 1. 3.(금요일)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13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 하동군 조례 제1214호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10
- 하동군의회 규칙 제2호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19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9-24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23
- 하동군 고시 제2019-242호 시군창의사업 알프스하동 에코뮤지엄 시행계획 고시... 26
- 하동군 고시 제2020-1호 하동군관리계획(시설:소하천,유수지및 저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7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9-1367호 내수면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29
- 하동군 공고 제2019-1371호 2019년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 정정지가 결정, 공시 30
- 하동군 공고 제2020-1호 2020/2021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공고... 31
- 하동군 공고 제2020-6호 범야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39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3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 1213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699	350	72	63	13	22	179
정 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 반	일반직 계		668	346	72	38	13	22	179
	4급 소계		4	4					
	서기관·기술서기관		4	4					
	4~5급 소계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보건진료사무관		1		1				
	5급 소계		38	17	1	5	2	1	12
	행정		4	3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5	5					
	행정·농업		3	1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시설		4	1				1	2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4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지도관		2			2			
	농업·지도관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6급 소계		166	84	14	10	2	5	51
	행정		9	9					
	세무		1	1					
	속기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6	6					
	운전		4			1			3
	행정·세무		14	8	1			1	4
	행정·사회복지		10	6				1	3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21	6		4		1	10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8	16					2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2	1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6						6
	행정·사회복지·시설		4	1					3
	행정·세무·농업		8	3					5
	행정·세무·시설		2	2					
	행정·세무·전산·농업		3	1				1	1
	행정·전산·농업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6	3					3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보건·간호		6		3				3
행정·시설·환경		1	1						
행정·해양수산·보건		2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행정·공업·환경·시설	4	4					
	행정·농업·녹지·환경	3	1					2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7급 소계	188	95	19	10	4	9	51
	행정	20	14		1	2	1	2
	세무	1	1					
	전산	1	1					
	사회복지	9	2				1	6
	속기	1				1		
	공업	2	2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시설	16	11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수의	2			2			
	운전	11	3	2			2	4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7	6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9	6		1		2	10
	행정·시설	16	12					4
	행정·환경	2	2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보건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농업·수의	1			1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2						2
	행정·세무·시설	5	2				1	2
	행정·전산·농업·방송통신	4	1		1			2
	행정·전산·시설	2	2					
	행정·농업·녹지	4	3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8	5					3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3	1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보건·환경	3	1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3	2					1
	행정·공업·시설·통신운영	3	2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8급 소계		175	88	33	3	2	3	46
	행정		21	14			2		5
	세무		1	1					
	사회복지		11	4				1	6
	행정·농업·방호		1			1			
	공업		1			1			
	해양수산		2	2					
	보건		12	2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5		5				
	식품위생		1		1				
	환경		1	1					
	시설		12	7					5
	행정·세무·농업·시설관리		2	2					
	운전		6	1					5
	행정·세무		5	5					
	행정·사회복지·시설		11	5				1	5
	행정·전산		2	2					
	행정·전산·농업		10	2		1			7
	행정·해양수산·시설·방재안전		5	3					2
	행정·시설		13	13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5	5					
	농업·녹지		4	4					
	행정·보건·간호		4	1	3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9	3					6
	행정·농업·시설		9	6					3
	행정·보건·환경		5	2				1	2
행정·공업·시설		2	2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9급 소계		96	58	4	10	1	4	19
	행정		14	8		2		2	2
	사회복지		13	5				1	7
	환경		2	2					
	공업		4	4					
	해양수산		1	1					
	보건		2	2					
	운전		3				1		2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7	4				1	2
	행정·농업		6	2		3			1
	행정·시설·방호		12	12					
	농업·녹지·시설		2	2					
	농업		2			2			
	보건·간호		3		3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전산·통신		3	2		1			
	행정·세무·시설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7	3		2			2
행정·환경·시설·방재안전		5	4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별 정	별정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		1				1		
	6급 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 구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3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 1214 호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 심

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제12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하 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경제전략과장, 민원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축산과장,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그 밖의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

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사망,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켰을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에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안전심의 기준) 위원회의 안전 심의는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민원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 반려·불가 사유의 적합성 및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3.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4.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5.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6.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
7.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

제10조(안전심의 결정) ①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한다.

② 민원처리주무부서 및 관련부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하동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군수는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원서류의 적합 여부 등 형식 요건 심사
2. 민원처리와 관련된 부서의 처리담당자 지정
3. 민원처리와 관련된 처리 통보기한, 통보내용의 범위 등의 협의

4. 여러 차례의 심의회 심의결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 나는 사항에 대해 위원회 상정 건의

②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민원명					
민원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처리주무부서			관계부서		
민원요지					
심의안건					
참고사항					

위와 같이 심의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

(서명)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민 원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민 원 명					
민원요지					
심의결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구 분	직 위	성 명	의 견		서명 또는 날인
			가	부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실무심의회) 회의록

- 안 건 :
- 일 시 :
- 장 소 :
- 참석인원 :
- 심의내용

구 분	내 용
위원장	

작성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3일

하 동 군 의 회 의 장 신 재 범

하동군 의회규칙 제 2 호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제18조에”를 “제19조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8조제3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1조제3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괄부서의 장을 그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를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자료제출 및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변경) ① <u>제18조에</u>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개의 전에는 의원의 회의출석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의사일정의 배부 및 통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u>제18조제3항</u>에 따른다.</p>	<p>제20조(변경) ① <u>제19조에</u> ----- ----- ----- ----- ----- ----- ----- ----- ----- <u>제19조제3항</u>-----.</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4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u>제21조제3항</u>의 전자문서로 하거나 이를 붙일 수 있다.</p>	<p>제24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제23조제4항</u>----- -----.</p>
<p>③ ~ ⑤ (생략)</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76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생략) ② <u>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그에 포함된 각 재산을 구분하여 해당 사무의 주무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한다.</u> ③ 상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해당 재산관리 <u>총괄부서의 장</u>을 그 소관</p>	<p>제76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자료제출 및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다.</u> ③ ----- ----- <u>주무부서의 장</u>으로</p>

사항으로 한정하여 출석·답변하
도록 할 수 있다.

하여금 -----
-----.

하동군 고시 제2019 - 241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3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36-4외 1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7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섬진강대로 3136-7외 1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2.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건물번호 부여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 동 사 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427-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36-4	2019 1230		2007 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성에 따 라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636-8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409-7	2019 1230		2007 0618	도로시점이악양중심으로부터서 쪽에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757-3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양보로 617-47	2019 1230		2007 0618	양보면 주요 간선도로로 면이 름을 사용하여 도로명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586-3, 585-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구통길 192	2019 1230		2011 0827	구통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산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궁항길 124-76	2019 1230		2009 0302	궁항리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779-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남양안길 30-29	2019 1230		2007 0618	남양이라는 자연마을명에 지역 특성을 합성하여 남양안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6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260	2019 1230		2009 0302	들과 포구가 있던 지명으로 들 포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305-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1길 24	2019 1230		2009 0302	목도라는 자연마을이름을 사용 하여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1155-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이터길 79-1	2019 1230		2008 0402	임지왜란때 양씨와 이씨가 피 란하였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 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284-2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길 78-1	2019 1230		2007 0618	산등성이에 용이 산다하여 붙 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590-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안길 27-19	2019 1230		2009 0302	위태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640, 산85-2, 산85-3, 641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장성모거 리길 8-7	2019 1230		2008 0402	고유지명인 장성과 모거리를 합성하여 장성모거리길로 명 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재첩길 7	2019 1230		2008 0402	도로변에 재첩마을이 분포하여 있어 지역적 특색을 도로명에	

부여	251-22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639-3, 639-5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173	2019 1230		2007 0618	염등만수 정자 숲의 서쪽 마을 에서 유래된 정서라는 자연마 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642-35, 642-15, 642-38, 642-39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199-8	2019 1230		2007 0618	염등만수 정자 숲의 서쪽 마을 에서 유래된 정서라는 자연마 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회신리 250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회신길 32-66	2019 1230		2008 0402	회신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717-6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보길 12-42	2019 1230		2008 0402	횡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 건물번호 폐지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교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교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악 양면 섬진강대로 3136-7		2019 1230	건축물철거에 따른 번호판 폐지	2009 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 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 동읍 매화골떡점길 92-1		2019 1230	건축물철거에 따른 번호판 폐지	2007 0618	매실이 많이 나는 마을 특성에 떡점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고시 제2019 - 242호

시군창의사업 알프스하동 에코뮤지엄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시군창의사업 알프스하동 에코뮤지엄 시행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알프스하동 에코뮤지엄 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지역 자연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정체성을 확립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에코뮤지엄을 조성하고자 함
3. 위 치 : 하동군 화개, 악양면 일원
4. 총사업비 : 886,000천원(국비 620,000천원, 지방비 266,000천원)
5. 사업내용
 - 에코팜 조성
 - 주민의식개선교육, 친환경 교육 및 벤치마킹 등
 - 황금들판 조성
 - 평사리 들판 경관조성(경관작물 식재, 유아등 설치) 등
 - 에코뮤지엄센터 조성
 - 차 박물관 및 평사드레 문화교류센터 개보수, 주민해설사 양성 등
 - 쉼표 전망대 조성
 - 악양천(독방) 경관전망대 조성, 스토리텔링 개발
6.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18년 ~ 2020년(3개년 사업)
8. 관계도서배치 : 관계도서는 하동군청 농업소득과(☎055-880-2714)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 고시 제2020-1호

하동군관리계획 (시설: 소하천, 우수지 및 저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동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규정에 따라 하동군관리계획(시설 : 소하천, 우수지 및 저류지)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01월 03일

하 동 군 수

1. 건명 : 군관리계획 【시설: 소하천, 우수지 및 저류지】 결정(변경)
2. 하동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가. 하동군관리계획(시설:우수지, 하천) 결정(변경) 조서
 - 1) 하동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소하천, 우수지 및 저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⑭	고하천	소하천	고전면 고하리 162-5	고전면 성평리 476-1	-	0.44	14~16	15,132	-	-
신설	⑰	주성천	소하천	고전면 고하리 197	고전면 고하리 173-1	-	0.30	7~9	4,057	-	-
신설	⑤	유수지 (펌프장)	유수지	고전면 고하리 713	고전면 고하리 713	-	-	-	1,900	-	-
신설	②	저류지	유수지	고전면 성평리 416	고전면 성평리 416-2	-	-	-	16,300	-	-

▪ 유수지,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⑭	고하천	·변경 - B = 14 ~ 16m - L = 440m - A = 15,132㎡	·고하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립에 따라 저지대 침수예방 및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사업을 시행하여 하동군관리계획(시설:유수지, 하천)로 결정코자 함
⑰	주성천	·변경 - B = 7 ~ 9m - L = 300m - A = 4,057㎡	
⑤	유수지 (펌프장)	·신설 - A = 1,900㎡	
②	저류지	·신설 - A = 16,300㎡	

3. 관계서류 열람 : 하동군 안전총괄과(관계도면 게재생략)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방재담당(055-880-22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2019 - 1367호

공 고(안)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한 어장에 대하여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일

하 동 군 수

□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어장 위치	면적 (㎡)	면허일자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하동공동 제6호	공동어업 (바닥식)	바닥식	재첩	금성면 궁항리 진정천 지선	10,000	2019.12.26	2019.12.26 2024.12.23	객***계 계장 김*규	신규

□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시설물은 본인 부담으로 철거 하여야함.

하동군 공고 제2019 - 1371호

2019년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년도분의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 1. 가격기준일 : 2019. 1. 1. 및 2019. 7. 1.
- 2. 정정지가 결정·공시일 : 2019년 12월 31일
- 3. 정정지가 결정·공시 필지수 : 1필지

정정 년도	토지소재지	지목	결정지가 (원/m ²)	정정지가 (원/m ²)	비 고
2019 년 1월1일	옥종면 법대리 산 33	임야	11,300	657	토지특성 오류정정
2019 년7월1 일	옥종면 법대리 산 33	임야	11,200	686	토지특성 오류정정

4. 행정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관리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055-880-2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년 12 월 31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20 - 1호

2020/2021년 해양수산사업 신청공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20/2021년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 신청방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하 동 군 수

■ 신청방법(요령)

1. 대상사업 : 붙임 내역 참조

- 2020년 미확정 해양수산사업 : 수산물 저온시설 지원 등 34개
- 2021년도 해양수산사업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등 34개

※ 2021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 지침 시달 시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대상 :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등

3. 신청기간 : 2020. 1. 2. ~ 2020. 2. 3.

4. 신청서 제출기관 : 하동군청(해양수산과), 읍·면 사무소(산업경제담당)

5. 신청서 안내기관

-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해양개발(880-2443~2445), 어업생산(880-2453~2454)
내수면개발(880-2448~2449)

-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 유 관 기 관 :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6.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군, 읍·면 사무소, 남해사무소, 하동군수협에 비치)
- 사업계획서(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만 작성)
- 보조사업 이력서(보조사업을 받은 실적이 있는 신청자)
-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록실적이 있는 경우)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 사업별 시행지침에서 요하는 구비서류

7. 기타사항

- 보조사업 이후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를 위해 보조금 범위 내에서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 설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음

2020년도 신청대상 해양수산사업

사 업 명	지원기준	지 원 율(%)			용자조건 (거치~상환)	신청자격
		보조	용자	자담		
수산물 저온시설 지원(저온창고)	1백만원/m ²	50		50		▶어업인, 어업인단체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	파우치	100원/장	50	50		▶어업인, 어업인단체
	파레트	50,000원/장				
	보관상자	5,000원/박스				
	재첩가방	2,700원/개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등 지원	멸치박스	500원/박스(1.5kg)	50	50		▶어업인, 어업인단체
	활재첩포대	300원/장(30kg)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산지가공시설)	1백만원/m ² HACCP 기준충족	60		40		▶ 수산가공업자, 어업인단체
패각파쇄기 설치 지원사업	17백만원/1대	100				▶어업인, 어업인단체
굴 박신장 소규모 패류 위생정화시설	40백만원/1개소	60		40		▶굴 박신업자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	50백만원/1개소	60		40		▶ 수산가공업자, 어업인단체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100백만원/1개소	100				▶어촌계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3개소	100				▶어촌계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2개소	100				▶어촌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창업자금	300백만원내/세대	100		2.0% (5년 거치 10년)	▶ 귀어업인, 재촌비어업인
	주택구입	75백만원내/세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해수열 히트펌프)	110백만원/개소	80		20		▶양식어업인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사업(산소발생기 등)	50백만원/개소	80		20		▶양식어업인
친환경부표 공급사업	수협중앙회 체결 단가에 의거 지원	70		30		▶어업인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노후기관, 장비 등)	수협중앙회 체결 단가에 의거 지원	60		40		▶어선어업인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20백만원/개소	80		20		▶양식어업인
해삼 씨뿌림사업	50백만원/개소	90		10		▶해삼 적지 어촌계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210백만원/개소	70		30		▶양식어업인

사 업 명	지원기준	지 원 율(%)			용자조건 (거치~상환)	신청자격
		보조	용자	자담		
(PE 가두리시설)						
면역증강제 공급사업 (어류 영양제)	20,000원/kg	60		40		▶양식어업인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리사이클링 시스템 지원사업	30백만원/개소	80		20		▶양식어업인
스마트 공동선별, 이동시스템 보급사업	250백만원/개소	80		20		▶양식어업인 단체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사업	3,780천원/대	60		40		▶어선어업인
어업생산기반 시설 설치사업	42.5백만원/개소	50		50		▶양식어업인
가두리양식어장 액화산소 지원사업	66,000원/통	100				▶양식어업인
가두리 관리자 현대화 사업	15백만원/개소	71		29		▶양식어업인
낚시터 조성사업	42.5백만원/개소	60		40		▶어촌계
어선인양기 대차 구입지원	4.25백만원/대	100				▶어촌계 (어업계)
소형어선항해장비 지원 (GPS)	수협중앙회 체결 단가에 의거 지원	60		40		▶어선어업인
소형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양망기, 가솔린기관)	수협중앙회 체결 단가에 의거 지원	60		40		▶어선어업인
남획방지용 재첩 손틀어구 제작지원	50만원/개	70		30		▶내수면어업인
재첩 이동용 컨베이어 설치 지원	22백만원/대	70		30		▶내수면어업인 어업계, 단체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구축 사업	VHF-DSC	120만원/대	60	40		▶어선어업인
	자동소화 시스템	165만원/개소				
	구명조끼	14만원/개				
	선박자동 입출항 단말기	125만원/개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 지원	14.5백만원/척	60		40		▶내수면어선, 어업인
재첩 선별기 지원사업	20백만원/대	60		40		▶내수면어업인 어업계, 어업인단체

2021년도 신청대상 해양수산사업

사업명		지원기준	지원율(%)			용자조건 (거치~상환)	신청자격
			보조	용자	자담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구축 사업	VHF-DSC	120만원/대	60		40		▶어선어업인
	자동소화 시스템	165만원/개소					
	구명조끼	14만원/개					
	V-Pass	125만원/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해수열 히트펌프)		110백만원/개소	80		20		▶양식어업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1,795천원/월	100				▶어촌체험마을 어촌계
낙시터 환경개선 사업		10백만원/ha	100				▶낙시터지정 어촌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보상금 및 잔존가치액 등	100				▶어선어업인
생분해성어구 보급 시범사업		수협중앙회 체결 단가에 의거 지원	100				▶어선어업인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PE 가두리시설)		210백만원/개소	70		30		▶양식어업인
패각 친환경 처리사업		20,000원/톤	80		20		▶어업인
친환경부표 공급사업		수협중앙회 체결 단가에 의거 지원	70		30		▶어업인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노후기관, 장비 등)		수협중앙회 체결 단가에 의거 지원	60		40		▶어선어업인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10백만원/개소	60		40		▶양식어장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노후기관, LED, 어선장비 등)		수협중앙회 체결 단가에 의거 지원	60		40		▶어선어업인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1년차: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 월80만원	100				▶신규어업창업 (예정)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124백만원 내/어 가	40		60		▶양식어업인 (10어가 이 상)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사업		20,000원/kg	60		40		▶양식어업인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산지가공시설)		1백만원/m ² HACCP 기준충족	60		40		▶수산가공업자, 어업인단체

사 업 명	지원기준	지 원 율(%)			용자조건 (거치~상환)	신청자격
		보조	용자	자담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100백만원/1개소	100				▶어촌계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20백만원/개소	80		20		▶양식어업인
양식어장 고도화 시설 지원사업	250백만원/개소	80		20		▶양식어업인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100백만원/개소	100				▶어촌(업)계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	170만원/개소	100				▶어촌체험마을 어촌계
경남추천상품(QC) 수산물활성화 지원	4.2백만원/개소	60		40		▶QC 지정업체
공동브랜드 (청경해) 박스 등 제작지원	10백만원/개소	60		40		▶청경해 지정 업체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	5백만원/개소	60		40		▶지역특화 수산물생산자
수출주력 품종 육성 지원	10백만원/개소	60		40		▶QC, 청경채, 지역특화 수산물 생산자
굴 박신장 소규모 패류 위생정화시설	40백만원/1개소	60		40		▶굴 박신업자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1,795천원/월	100				▶자율관리 공동체
다목적 해상공동 작업대 설치 지원	50백만원/개소	80		20		▶어촌계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	50백만원/개소	80		20		▶어촌계
면역증강제 공급사업	20,000원/kg	60		40		▶양식어업인
불가사리·성게 구제사업	수매비 1,000원 /kg	100				▶어업인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 지원	14.5백만원/척	60		40		▶내수면어선, 어업인
어구 보관창고시설 지원사업	100백만원/개소	100				▶어촌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 원 사업	창업자금	300백만원내 /세대		100	2.0% (5년 거치 10년)	▶ 귀어업인, 재촌비어업인
	주택구입	75백만원내/세대				

※ 상기 사업 외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시는 우리군 해양수산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및 지원율은 2019년도 기준이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신 청 서(제15조 관련)

신 청 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호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지방비 (%)	자부담 (%)	
사업내용별 규모 (량)						
<p>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하동군수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p>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 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 이력서 (제15조 관련)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하동군 공고 제2020-6호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공 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20. 1. 2.

하 동 군 수

1. 공공하수도 현황

○ 기본현황

처리장명	위 치	시설용량 (m ³ /일)	처리방식	처리구역 (ha)	배제방식	사용개시일
범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425-9 외 3필지	40	JSBR 공법	11.5	분류식	2020.1.2.

○ 방류수질

처리장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범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범 적 수 질	10.0	40.0	10.0	40.0	4.0	3,000이하
	설 계 수 질	4.2	10.0	4.0	9.0	0.8	30
	방 류 수 질	0.7	2.0	0.6	1.95	0.155	0

○ 방류수계

처리장명	방 류 수 계
범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처리장 → 고전천→섬진강하류

2. 사용개시(공고)일

- 2020. 1. 2.

3. 기타

-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발생(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하수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하동군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하수처리구역 열람(현황 및 도면)과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청 수도사업과 하수도담당(☎055-880-2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